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6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김정호·오세희·전진숙

어기구 • 박희승 • 임미애

허종식 • 이연희 • 정성호

전재수 · 신영대 · 이수진

윤후덕 • 최기상 • 김남희

박 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 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 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신 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에"로 한다.

- ②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갈등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갈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①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갈등영향분석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제6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를 "안전성 확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8항"을 "제13항까지와"로 한다.

-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존재 또는 갈등의 유발 가능성 여부
-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심의를 할 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갈등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각각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10조의3제7항"을 "제10조의3제7항"을 "제10조의3제8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8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 및 운영) ① -----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갈 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갈등조 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

<신 설>

<신 설>

- 선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사람
- 2. 갈등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 3. <u>갈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u> 계자
-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갈등영향분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 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을 위한 규

<신 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 ① ~ ⑤ (생 략)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 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
등 조정 등을 위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이 경우 갈등조정
위원회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조정되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⑩ 회의에 참석한 갈등조정위
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런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u> </u>
운영 및 갈등영향분석 실
시 등에
1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6

1. ~ 5. (생 략) <u><신 설></u>

<u>6.</u> (생 략) <u><신 설></u>

-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u>안전</u> 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 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8</u> <u>항</u>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 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
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존재 또는 갈등의 유
발 가능성 여부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6
항의 심의를 할 때 같은 항 제
6호에 해당하여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
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갈등조정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u>⑧</u> <u>안전</u>
성 확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u> </u>
<u>.</u>
<u>⑨</u>
제8항
· ①
항
<u> </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생략)
- ①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 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 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 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 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
 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
 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

<u>.</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3항까지와</u>
<u>.</u>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u>제10조의3제9항</u>
② <u>제1</u>

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한다.

- ③ ~ ⑤ (생 략)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10조의3제7항</u>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u>제9항</u>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0조의3제9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u></u>
<u>.</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의3제8항</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의3제8항</u>

3. (생략)

⑦·⑧ (생 략)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⑦ 제1항 및 <u>제10조의3제10항</u>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제10조의3제11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3제9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연영과 실금) (7)제10조의3제11항-
() <u>\\\\\\\\\\\\\\\\\\\\\\\\\\\\\\\\</u>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 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 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 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 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 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 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 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 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① (생 략)

·.
⑧ 제10조의3제9항
 ⑨ <u>제10조의3제9항</u>
•
9 <u>제10조의3제9항</u>